

초과근무 명령서(외근부서용)

2018. 2. 27. 화요일

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.

부서명 : 양천소방서 / 현장대응단

계급	성명	근무시간	하여야 할 일(구체적으로 작성)	구분 (사전/사후)	비고
지방소방교	박용준	(당일)17:45부터 (익일)09:00까지	출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근무 및 초과근무 -사고자 : 사.심상돈(파견)	사전	
지방소방위	노재운	(당일)09:00부터 (당일)13:00까지	소방위 노재운 출동력확보를위한 초과근무 (09:00~13:00) 사고자:소방위 오광천(출장)		
지방소방장	송경선	(당일)14:00부터 (당일)18:00까지	소방장 송경선 출동력확보를위한 초과근무 (14:00~18:00) 사고자:소방장 고명실(출장)		